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

- 금융위원회는 ‘보험업 감독규정’을 개정하고 12월중 규제개혁위원회,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.
 - 2010년 7월 23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실시함.
-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기준 범위 및 약관 이해도 평가 기관 설정, 설계사 교육의 구체적 방법 규정, 자회사 소유시 승인기준 신설, 장기손해보험 보험기간 15년 유지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.
 -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는 보험대리점의 범위를 모집종사자가 10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으로 함.
 - 법 개정으로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‘약관이해도 평가제도’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하고,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소비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함.
 - 보험설계사와 개인 보험대리점·중개사에 대한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최초 등록 시,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(외부교육 5시간)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방식을 규정함.
 - 보험협회, 보험연수원,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「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」가 표준 교육과정 및 외부 교육 방식을 결정함.
 - 외부교육은 보험연수원, 대학교, 보험연구원 등의 외부기관 및 보험관계단체에서 윤리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외부 강사가 실시하도록 함.
 -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 기준을 신설함.
 - 보험회사는 지급여력 비율 150% 이상,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자회사는 금융업종인 경우 지급여력 비율 100%, 비금융업종인 경우 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등을 기준으로 규정함.
 -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는 생·손보 경영금지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상품만 개발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함.

(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, 금융위, 11/23)